공유재산(토지) 대부 공고(안)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(계약의 방법)의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(일반재산-토지)에 대하여 대부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3.

대 강 중 학 교 장

1.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

가. 수의계약건명: 공유재산(토지) 대부

나. 대부재산

순	재산의 표시				대부		대부료	
	소재지	지목	공부 면적 (㎡)	소유자	면적 (㎡)	대부 목적	예정가격 *최저금액	대부기간
1	전라북도 남원시 대강면 방동리 467-1	전	862	전라북도 교육감	862	경작	82,830원	2025.3.1.~2027.2.28. (2년)

- ※ 예정가격 산출근거 : 대부면적 × 공시지가(m'당) × 요율(경작1%) X 사용일수
 - -공시지가: 9.610원(대강면 방동리 467-1)
- ※ 다음 연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매년 공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매 다음 연도 시작 1개월 전에 피대부자에게 공지합니다.

2. 지원 기간 및 방법

- 가. 지원 기간: 2025.1.6.(월) ~ 2025.1.13.(월) (매 평일 09:00~16:00)
- 나. 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기간 내에 대강중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**공유재산** 대부 수의계약 지원서(붙임2) 제출
- 다. 지원자 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, 도장,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현주소 확인용 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)

3. 지원자격

공고일 현재 대강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실제 경작이 가능한 자

4. 수의계약자의 결정방법

- 가. 2025.1.16.(시간 추후 공지) 지원자 전원 입회 하에 개봉
 - ※ 불참 시 대부 의사 없음으로 간주함.
- 나. 지원 기간 내 지원서에 의하여 최고가를 제시한 자와 수의계약
- 다. 최고가제시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음 순위자들과 차례로 계약을 체결함

5. 대부계약의 체결 및 대부료

- 가. 결정된 수의계약자는 대강중학교 행정실에 방문하여 **대부신청서 및 계약서**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O 계약일: 2025년 2월 중
 - 계약장소: 대강중학교 행정실(본교 1층)
 - 계약체결 시 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, 도장, 주민등록 초본(또는 등본) ※ 주민등록 초본(또는 등본)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에 한함.
- 나. 수의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별도 고지서에 정해진 연간 대부료를 일시에 완납하여야 하며, 대부료 미납부 시 대부계약 해지 사유로써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6. 유의사항

- 가.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및 같은 법 시행령, 『전라북도교육 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』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,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』및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대부계약 조건에 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합니다.
- 나. 본 수의계약은 **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현 상태대로 대부하므로,**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대부재산의 현장답사, 각종 공부의 확인, 법률·행정상 규제와 공유재산 대부의 일반원칙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.
- 단, 향후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 사용 중인 재산 면적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감면적에 대하여 정산 또는 면적변경 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대부자가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 - ※ 대부재산의 위치, 모양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, 당해 재산의 토지활용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·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위 가, 나 항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라. 수의계약자가 다른 법령이나 행정상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하여 허가받은 재산의 활용에 제한을 받거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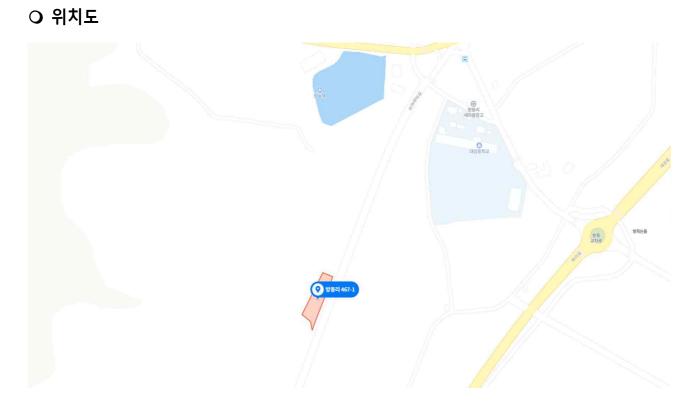
- 마. 대부재산의 지상(地上)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<u>어떠한 시설물도 설치</u> **할 수 없으며 사전 동의 없이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계약해지의 사유가** 됩니다.
- 바. 대부재산은 <u>농경지로서 농작물만 경작할 수 있고</u>, 해당 목적 내의 사용권을 제외한 일체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, <u>계약재산의 일부 또는 전체를 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</u>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35조(대부계약의 해지 등) 위반 사유로 대부계약을 해지합니다.
- 사. 계약 후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목적 등으로의 사용을 불허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아. 대부계약기간 중이라도 당해 재산이 매각되어 재산의 소유가 바뀐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당해 공유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은 당연 해지하고, 대부자는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, 납부한 대부료에 대하여는 대부계약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.

7.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

기타 대부 재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강중학교 행정실 재산담당자(063-625-0352)에게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가. 대강면 방동리 467-1



O 현장 사진

